

2023년도 제2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9. 26.(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손수호(분과위원장), 김정숙,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3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74건(안전번호 제2023-178435호~179708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178435호~178436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안전번호 제2023-178437호~178444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78445호~178468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78469호~178477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78478호~178487호는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1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196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3-19611호~19806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196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수호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3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수호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손수호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준근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넷■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손수호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053 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78435호~17843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서 최신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배포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자막만 있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자막 이외에 다른 저작물은 없음.
- C 위원: 자막만 있는데, 영상 저작물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자막 파일의 파일명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토렌트 등을 이용하여 자막 파일의 파일명과 동일하게 배포되는 불법 저작물을 다운 받는데 이용할 수 있음.
- A 위원: 음성은 한국어로 나오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음성은 기본적으로 일본어가 나오며 자막을 다운 받아서 이용하는 경우 영상 자막에 한글로 표시됨.
- B 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자막파일은 번역물로서 2차적 저작물 이기는 하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해당 자막이 2차적 저작물로서는 괜찮지만, 합법 시장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규제 해야 한다는 뜻인가. 2차적 저작물도 허락 없이 만드는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여 검토보고서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마치 심의 대상 게시물에 있는 자막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김태일 주임: 해당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임. 추정컨대 당연히 권리자에게 허락을 안 받았겠지만, 일일이 해외에 있는 권리자에게 확인할 수가 없

기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B 위원: 우리가 심의 할 때 그 부분이 고려 사항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재하지 않겠다고 결론 난 적은 없을 것임.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의 유통 경로를 봐서는 당연히 불법적이고 아무리 자막을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저작물 작성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유통 과정이 아님. 다만 자막을 넣는 이유가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난청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심의 대상 게시물 같은 경우는 불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손수호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70797호~17080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C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손수호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78435호~17843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78437호~17844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손수호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78437호~178444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손수호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78437호~17844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78445호~17846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상습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심의대상 게시물처럼 뮤지컬 판매·교환 게시물을 한번 올린 사람만 대상인가 아니면 몇 차례 반복해야만 하는가?
- 김준근 주임: 뮤지컬의 경우 온라인보호부의 재택 모니터링 요원들이 모니터링 한 것을 심의 요청하고 있으며 특정 게시자의 게시물이 한 건만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건이 올라올 수도 있음. 뮤지컬은 한 건만 심의에 올라온다고 해서 게시자가 해당 한 건만 올린 것이 아니며 게시물의 올리고 삭제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예를 들어 특정 게시자의 심의 대상 게시물이 2건인 경우 실제로는 더 많은 게시물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게시자가 매일 매일 게시물을 삭제 혹은 비공개 처리하여, 매일 심의 요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임.

- B 위원: 영화와 달리 공연물은 도촬 규정이 없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를 허락 없이 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함’이라는 표현이 있음. 공연물을 허락 없이 촬영한 것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이용일 수도 있음. 즉 복제권 침해의 가능성은 있지만, 촬영 행위 자체를 복제권 침해로 보는 것은 비약일 수 있음. 촬영한 것을 올렸을 때 복제·전송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단정적으로 침해라고 하면 공연장에서 촬영하는 행위 전부가 그 당시에 복제권 침해 행위가 되어 버리는 것인데, 영화와 달리 이런 공연물은 사적 복제로 볼 수 있으며 사적 복제는 허용되는 범위임.
- A 위원: 처음에 공연 시작하기 전에 촬영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지 않나?
- 이숙형 부장: 영화관과 달리 그런 부분이 있음. 다만 파일이 게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님.
- A 위원: 촬영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호원과는 다른 각도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지금은 온라인상에 업로드 된 복제물에 한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임.

- C 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B 위원: 영화와 공연물을 똑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임.
- C 위원: 공연물은 작품이 전파되는 것보다 창작성을 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문제가 됨.
- 손수호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78445호~17846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C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손수호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78445호~17846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78469호~17847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올라오는 저작물을 보면 '칸호학' PDF가 많은데, 수요가 많은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칸호학' 관련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것

인가?

- 김준근 주임: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모니터링시 '★★★' 관련 게시물이 많이 나오고 있음
- 손수호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78469호~17847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손수호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78469호~17847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78478호~178487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손수호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78478호~17848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

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손수호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78478호~17848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78488호~17970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일반영상, 출판/어문, 만화/웹툰, 방송, 영화, 음악, 게임,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78818호(‘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2023.07.05. 개봉한 한국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450인트에 판매중임. (‘바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78880호(‘바비’)는 2023.07.19.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540포인트에 판매중임. (‘보호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제2023-178930호(‘보호자’)는 2023.08.15. 개봉한 한국 영화로 웹하드에서 밴드에서 배포중임.

- 손수호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178488호~17970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손수호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3-178488호~17970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78435호~178436호, 제2023-178437호~178444호, 제2023-178445호~178468호, 제2023-178469호~178477호, 제2023-178478호~178487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78488호~17970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9611호~19806호(순번 1번~196번)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손수호 분과위원장이 제2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0. 10.

분과위원장 손수호

위원 김정숙

위원 한승원